

2021년도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공동모의고사

수험번호	
성명	

1 책형

형사법

응시자 주의 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 해당 과목은 영점 처리 됩니다.
 2. 시험 시작 즉시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수험생은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4. 문제 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지 사 항

1.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정답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형사법

문 1.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결과적가중범인 특수폭행치상죄는 중전에는 고의범인 상해죄, 중상해죄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였으나,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후로는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범죄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 ㄷ.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행위가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ㄹ. 기본범죄 이후에 행위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행위인 제2의 행위에 의한 인과의 진행은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위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없다.
- ㅁ.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인식한 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아니지만,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된다.
- ㄴ. 갑이 A를 향하여 살해의 고의로 몽둥이를 양손에 집어 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A와 A의 등에 업혀있던 B의 머리 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B를 사망케 한 경우, 착오에 관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갑은 B에 대한 살인기수의 죄책을 진다.
- ㄷ.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

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법률을 알지 못한 경우는 당연히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ㄹ. 갑은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캄캄한 밤중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공범의 독촉을 받아 자신의 장모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문 3.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절도를 의심하며 갑을 붙잡자 벗어나려고 A의 머리채 잡았다면 갑의 행위는 본능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갑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A가 자신의 아들 B와 함께 갑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갑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 A와 B는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갑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A와 B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A가 칼을 들고 갑을 찌르자 그 칼을 빼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갑이 파종한 보리가 30센치 이상 성장한 상황에서 토지매수자인 A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성장한 보리를 갈아 뭉게자 갑이 이를 막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⑤ 이혼소송중인 남편 A가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갑이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4.

심신장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 ② 소아기호증 또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

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③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를 인정하여야 한다.
- ④ 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⑤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시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문 5.

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후회하고 자의로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교사는 장애미수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②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 중 주관설에 충실하면 미수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 ③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은 중미지수범의 성립을 논하는데 실익이 있다.
- ④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객관설은 개념상 항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절대적 불능,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개별적 상황에서 특수한 사정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대적 불능으로 나누고, 그 중 상대적 불능만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⑤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다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문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은행원이 아닌 甲이 은행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甲은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인 乙에게 乙의 직무와 관련하여 丙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도록 교사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③ 의사가 의사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도 형법 제33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분으로 본다면,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父를 살해하게 한 경우, 통설에 따르면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문 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강요하여 乙의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경우 (강요죄는 별론으로 하고) 강요에 의한 자상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 있다.
- ③ 호적계장인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부탁을 받고 면장 모르게 호적계에 보관중인 면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용지에 날인하여 A의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중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 ⑤ 甲이 강도피의자 A를 도피시키는 행위를 하던 도중에 乙이 이에 가담한 경우, 乙은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문 8.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②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다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 ③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 ④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는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범죄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문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3조에서 말하는 신분은 범인의 일신전속적 속성에 한정된다.
- ②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자와 상해의 고의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③ 성인과 형사미성년자가 공동의 범행결의에 따라 실행을 분담하였다더라도, 성인과 미성년자 간에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단지 성인에게 간접정범만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소극적 신분의 경우 신분 있는 정범을 교사한 신분 없는 자의 죄책은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 ⑤ 부진정신분범의 가중적 신분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자신은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오하였다면, 형법 제15조 제1

항이 적용되어 중한 죄로 별하지 아니한다.

문 10.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③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 ④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더라면 그 수개의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없다.

문 11.

체포죄와 감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甲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甲이 A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A를 세 번 밀쳤고, A가 甲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甲이 쫓아 나왔으며, A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A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쳤고, 甲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A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甲의 가슴을 밀어낸 경우, 甲의 행위는 체포미수죄에 해당한다.
- ② 정신병자는 현실적인 행동의 의사가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은 乙 등과 A로부터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다음, 그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甲의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⑤ 甲이 자신의 아버지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중감금죄에 해당한다.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와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때에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②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된다.
- ⑤ 갑이 권한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에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갑에게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을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문 13.

소송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갑이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을 뿐 더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③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해 준 자가, 가등기등말소청구소송에서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들의 문서위조와 인감위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이 아니다.
- ④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에 해당한다.

문 14.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 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강도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피고인들이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허위 서명을 하여 피고인들이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강도죄나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강간 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 ④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운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다면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⑤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촉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문 15.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요구되며,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법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벌금·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판의 집행은 물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된다.
- ④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값이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 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

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 때에는 횡령죄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문 16.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갑이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인 을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갑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범행을 방조한 갑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②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갑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된 경우에는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인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갑이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인 을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그것을 점유할 권한이 있더라도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 ⑤ 본범과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은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의 자는 장물운반죄에 해당한다.

문 17.

아래의 방화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X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X건물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X건물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방화죄를 저질렀다. 위 X건물은 폐가로서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었다. ㉡ 그 후 甲은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워 위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불태웠다.

- ① ㉠에서 방화의 대상인 X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므로 X건물에 대한 방화죄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② ㉠에서 X건물은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고,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에 해당한다.
- ③ 결국 ㉠에서 甲의 X건물에 대한 행위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④ ㉡에서 노상에 있던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에서 기상 조건, 주변 상황과 화염의 높이 등에 비추어 甲의 행위로 인하여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문 18.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 ②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읍셋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위조하려고 진정한 통화를 사진 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든 경우 통화위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 ③ 형법 제207조의 통화위조죄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도 피교부자가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었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문 19.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하던 A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 A를 甲이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 A는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 ④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는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므로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⑤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었다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

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20.

위증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 ②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피고인 자신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위증죄의 교사범이 될 수 없다.
- ④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변론의 분리 여부에 관계없이 증인적격이 없고, 따라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21.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② 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위 항소이유서 제출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 ⑤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문 26.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친다.
- ⑤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 27.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 ④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 ⑤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사람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피내사자 신분이라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28.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③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속칭 전화사기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면서 그 주거지에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문 29.

증거보전(형사소송법 제184조)과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원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동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甲과 乙이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0.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에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 31.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합범 중 일부는 유죄가 선고되고 일부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때에는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상소심에 이심된다.
- ②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선고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판결주문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항소제기 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 ③ 포괄일죄의 일부사실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나머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한 상소를 하더라도 검사의 상소는 그 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치고 유죄부분도 상소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 ④ 항소심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만이 항소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했다 하더라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⑤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문 32.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외에서 횡령행위를 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해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② 중지미수범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미수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공소제기후 공소장변경이 행해진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미치므로,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

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⑤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에서 후자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전자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문 33.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⑤ 제1심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문 34.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③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문 35.

증거와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의 유무에 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동법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3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게 하고 사후 압수영장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 ㄷ.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 ㄹ.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후 피고인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

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ㄹ.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① ㄴ, ㄷ
- ②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ㄹ

문 37.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②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다투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③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 ⑤ 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乙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甲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乙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38.

증거동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거동위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②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를 간주된다.
-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를 간주된다.

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문 39.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까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러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특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령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않았던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더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문 40.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②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한 공판조서라도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 증명력이 있다.
-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 ④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